■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의2서식] <개정 2019. 12. 20.>

유해화학물질 시약 정보 요약서		이 요약서는「화학물질관리법」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시약을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며,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준수하여야함을 구매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판매업 상호(명칭)		하크코리아 유한회사
판매업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106길 5, 2층 (삼성동, 아이파크타워 2)
판매업 대표전화		02-3484-5700
유해화학물질 정보	물질명	Phenol
	고유번호 또는 식별번호 (CAS No.)	108-95-2
	용도	수질 분석용 시약
취급 기준 준수	취급시설	- 작업장 부근에 비상시를 대비하여 샤워시설 및 세안시설을 갖출 것. - 작업장 내에 유출 시는 국소배기장치를 가동할 것.
	화학사고 예방	- 취급 시 피부접촉을 피하고 보호의, 보안경, 가스마스크, 앞치마(고무), 보호장갑(PVC 또는 부틸고무재질)을 착용할 것. - 취급 시 양압자급식호흡용보호장비(positive pressure self-contained breathing apparatus)를 착용할 것. - 취급 시 콘택트렌즈를 착용하지 말 것. - 취급 후, 손을 철저하게 씻을 것. - 오염된 옷은 버리고 재사용하기 전에 세척할 것. -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서만 사용할 것. - 빈 용기를 가압, 절단, 용접, 납땜, 연마, 천공을 해서는 안 되며, 열, 스파크, 화염에 노출시키지 말 것. - 저지대에 머물지 않도록 할 것. - 밀폐된 장소는 반드시 환기 시킬 것.
	보관・저장	- 통풍이 잘 되는 냉암소에 밀폐보관 할 것. - 빛을 완전 차단한 곳에 저장할 것. - 저장용기는 물리적인 손상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페놀수지, PVC, 네오프렌, 사란 (saran), 폴리에틸렌재질의 것은 사용하지 말 것. - 필요에 따라 국소배기장치를 가동할 것. - 열, 스파크, 화염, 점화원과 가까이 두지 말 것.
	운반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저장·적재·입출고 중에는 내용물이 환경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포장할 것 - 유해화학물질 운전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이어야 함.
	기타	- 가연성이 좋은 물질에 녹이거나 혼합시킨 후 재연소장치 및 가스세정기가 부착된 화학 소각로에서 태울 것.-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폐기할 것 - 화학사고 발생 시 소방서 및 화학 물질안전원, 합동재난방재센터 등 화학사고대응기관에 연락할 것 - 취급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것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참조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